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이유서

성명	한글	김재룡	일본명	
	한자	金在龍	이재룡	
출생 연월일	미상		사망 연월일	미상
본적	충청남도 舒川郡			
경력	1904년 이전			
	1903.4.30~1903.5.1	통신사 전화과 주사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 II, 178쪽; 황성신문, 1903년 5월 4일 1면)		
	1903.5.14~1903.5.16	중추원 議官 (안용식, 같은 자료 II, 178쪽; 황성신문, 1903년 5월 19일 1면; 21일 1면)		
	1904년 ~ 1945년			
	1910년 초	국민의무찬성회 조직 (戶叶薰熊·樽崎觀一, 朝鮮最近史, 241쪽)		
	1910.5.5 경	유생건의소 발기 및 조직 (황성신문, 1910년 5월 5일 3면)		
	1910.7월 경	시국연구소 조직 (황성신문, 1910년 7월 29일 2면)		

조사 대상

1. <일제강점기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 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와 관련하여

1) 유생 김재룡 등의 정합방찬성 활동

▶ 『국민신보』, 1910년 2월 18일 3면, 「縉紳上摠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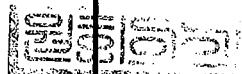
“충남 서천군 거주 정3품 김재룡씨 등이 정합방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뜻으로 어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씨에게 장서를 올렸는데 그 전문이 아래와 같다.

(중략) 일진(一進) 정당만이 손을 써서 나라가 막 빠지는 것을 잡아당겨 일본이 화의(和意)로 돌아가게 애썼습니다. 정합방론을 제출한 것은 만 명이 죽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萬死一生) 길에서 나온 것으로 해를 움직이고 하늘을 돌리는 계책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올리면 각하는 의당 여론을 채택하여 즉시 폐하의 허락을 받아 사직을 보존하고 민족을 보호하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올리고 다시 물려서 국가의 대사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유린하십니까. (중략) 정합방 문제를 상주(上奏)하고 통감부와 일본 내각이 곧 신속히 시행할 것을 호소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몹시 다행이며 일본과 한국 양국은 몹시 다행입니다 (중략)

융희4년 2월 17일

정3품 김재룡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각하”



▶ 『국민신보』, 1910년 2월 22일 3면, 「縉紳上統監書」.

“紳士 김재룡씨 등이 정합방을 찬성하여 내각에 장서를 提呈한 일은 既報와 如 하거니와 금회 曾禰通감에게도 장서를 提呈하였는 데 그 전문이 如左하더라.

(중략) 이것을 불잡고 궁구하여 취사한 끝에 하나를 정하였으니 政合邦 논의는 일본과 한국의 장기적인 계책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각하는 어찌하여 채택하고 귀국 정부에 보고하여 즉시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겨를이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근심이 百出하여 累卵之勢를 면하지 못합니다 (중략)

융희4년 2월 20일

충남 서천군 정3품 김재룡(중략)

통감 자작 曾禰荒助 각하”

▶ 『국민신보』, 1910년 3월 1일 3면, 「送函一進會長」.

“紳士 김재룡씨 등이 정합방 찬성에 관한 장서를 내각과 통감부에 提呈한 전문

은 日前에 己揭하였거이와 昨日에 再히 일진회장 이용구씨에게 左揭와 如한 公函
을 送致하였더라

(중략) 현재 우리 대한의 위급함이 비상한 때라고 할 수 있으나 구할 수 없는데, 오직 각하만이 계책을 내고 노심초사하여 위급함에서 벗어나 안정되기를 계획하며, 급함을 잡아당겨 느리게 하여 일한정합방론을 제창한 것은 비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중략)

융희4년 2월 28일

현주소 서부 소의문 내 관정동 51통 6호

충청남도 서천군 김재룡 (중략)

일진회장 이용구 각하”

▶ 『국민신보』, 1910년 3월 2일 3면, 「送函贊成會長」.

“紳士 김재룡씨 등이 재작일에 국민동지찬성회 이범찬씨에게 左記와 如한 公函
을 繕送하였더라

(중략) 지금 일진회의 정합방 문제에 반대가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시세를 살펴보고 그 이해를 엿보아 확연하게 스스로 찬성을 정하고 절규하는 ~~시기~~ ~~국회~~입니다. 어찌 같은 소리로 같은 기운으로 서로 응하고 서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합방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도리어 어두워 알지 못하고 죽음에 임박했음을 두려워합니다. (중략) 그러나 지금 일진회장 이용구씨와 같은 자는 때를 아는 정치가입니다. 반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고 찬성하여 그것을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국회 여러분들은 이미 두 번째로 때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찌 저희들의 권면을 기다릴까 만은 저희들도 역시 소리를 함께 내고 기운을 함께하는 본보기입니다 (중략)

융희4년 2월 28일

현주소 경성 서부 관정동 51통 6호

충남 서천군 정3품 김재룡 (중략)

국민동지찬성회장 이범찬 각하”

▶ 『국민신보』, 1910년 3월 4일 3면, 「國民同志會答函」.

“국민동지찬성회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김재룡씨에게 答函한 전문이 如左하다더라. (중략) 그런데 하물며 황실이 존영하고 인민이 동등해지는 정합(政合)의 공법임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진(一進) 정당이 그 논의를 주창하고 저희들이 같이 소리를 내어 급히 외쳐서 목표에 도달하기를 기약한 것이 이것입니다 (후략)”

▶ 『국민신보』, 1910년 3월 9일 3면, 「一進會長答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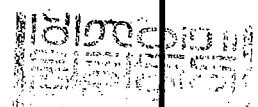
“정3품 김재룡씨등이 일진회장 이용구씨에게 送函한 전문은 己爲揭載하였거니와 同회장 이용구씨의 答函이 如左하더라.

(중략) 저희 일진회 백만도 조국의 국민이고 여러분 제공(諸公)도 조국의 국민입니다. 이 조국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반드시 망하는 경우에 처하여 이를 안정시키고 보존하는 것은 비단 저희 단체 백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역시 제공의 의무이고, 비단 제공의 의무가 아니라 모름지기 역시 2천만 국민동포의 의무입니다. 오후라 저희 일진회가 제창한 정합방(政合邦)이라는 것도 감히 잘하는 일로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않고, 제공이 그 동정을 표시한 것도 또한 감사하다며 소리를 내어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천만 국민동포가 모두 제공(諸公)과 같이 그 동정을 표시한다면 어찌 조국이 반석 위에서 안정되지 않겠습니까(중략)

융희4년 3월 일

일진회장 이용구

김재룡 첨공족하(僉公足下)”



▶ 『통감부문서』 10권, 24. 統監上京中往復書類; 『국민신보』 1910년 3월 27일 3면.

“한국 진신유생 김재룡 등이 삼가 재배하고 대일본내각총리대신 각하게 글을 올립니다.

(중략) 근래 우리나라 국민이 귀국 정부와 더불어 수레와 수레바퀴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輔車相依)를 도모하고자 하여 정합방론(政合邦論)을 창출하였으니 실로 우리 동아 4천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중략)

귀국이 우리나라를 탄압하고서 어떻게 힘을 합하여 열강을 응시하겠습니까.

귀국의 교섭을 멀리하고서 어떻게 이웃처럼 우리나라를 좋아하여 큰 수레의 쪽기를 작은 수레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론이 일어난 것은 실로 하늘이 보고 듣는 것에 합치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 두 나라 사이에서 정성껏 돌봐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각하께서는 이를 상주하여 재가를 받아 즉시 시행하여 우뚝 서서 동아 4천년의 일대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융희4년 3월 24일

현주 한국 경성 서부 관정동 51통 6호

충청남도 서천군 정3품 김재룡 (중략)

경상북도 상주군 6품 千愚相

대일본내각총리대신 桂太郎 각하”

2) 국민의무찬성회 조직과 김재룡의 활동

▶ 戸叶薰熊 · 樽崎觀一, 『朝鮮最近史』, 蓬山堂, 1912, 241쪽.

“(전략) 일진회의 주장을 옳다고 여기어 일한합방에 찬동하는 이는 이학재가 이끄는 대한상무조합, 서창보 등의 국민동지찬성회, 최정규 등의 찬성건의소, 김재룡 등의 국민의무찬성회, 서긍순의 신사협의소 제단체로서 이들은 모두 일한합방찬성과 관련된 의견서를 통감부에 제출하고 일진회의 합방운동에 한 목소리를 내어 도와줌으로서 더불어 하였고 (후략)”

3) 유생건의소 조직과 김재룡의 활동

▶ 『황성신문』, 1910년 5월 5일 3면.

“縉紳이라 자칭하고 합방홍설을 찬성하던 김재룡 등은 또 명목을 변경하야 유생건의소를 빙기하얏다지 (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6일 2면, 「유생결식」.

“소위 유생건의소는 근일에 재정이 군졸하여 몇몇 유생들이 친구의 집으로 다니며 결식하는 중인데 미구에 해산될 모양이라더라.”

4) 시국연구소 조직과 김재룡의 활동

▶ 『황성신문』, 1910년 7월 29일 2면, 「在龍建白」.

“김재룡 爲名者는 소위 시국연구소를 기설하고 向日한일합방 急施를 曾爾통감에게 건백하더니 금번에도 又 寺內통감에게 前과 동의의 건백서를 제출하라 한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29일 3면, 「또 해보겠다고」.

“유생중 어떤 파에서 시국연구소를 설치하고 향자에 한일합방을 급히 하자고 증미통감에게 건백서를 제출하였던 김재룡은 소네통감에게도 그 의견으로 건백서를 제출하려 한다더라.”

관련

1909년 12월 4일 일진회가 합방청원을 내각과 통감부 등에 상주하자 이에 동조하여 ‘합병’ 지지를 위한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김재룡에 의해 조직된 국민의무찬성회, 유생건의소, 시국연구소도 그 같은 단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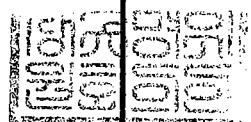
1910년 5월 김재룡에 의해서 조직된 유생건의소는 일진회의 ‘합방청원서’에 동조하여 급조된 유생단체이다. 시국연구소 또한 합방찬성을 위해 조직되어 합방찬성에 관한 의견서를 통감부에 제출하였다.

김재룡은 이 같은 단체들을 조직하기 전에 이미 내각과 통감부에 정합방을 찬성하는 장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진회장과 국민찬성동지회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 같은 김재룡의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재룡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